중소벤처기업부 **보도참고자료**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<전매체> 배포즉시	-

담당 부서	상생협력정책관 불공정거래개선과	책임자	과 장	노형석 (044-204-7940)
		담당자	사무관	김범철 (044-204-7941)
			사무관	문창식 (044-204-7798)

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- 수·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기반 마련 -

□ **수·위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**을 지원하기 위해 **수·위탁분쟁조정협의회**를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

□ 분쟁조정 신청 시 **민사상 시효중단 효력 발생**, 수·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**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권 부여**, **조정서**에 **집행력 부여 등**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

□ 법 위반기업이 행정조치 전에 **자발적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**한 경우 **행정처분 면제 또는 벌점을 경감**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이영)는 **수·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등을** 내용으로 하는 **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**(이하 '상생협력법'이라 한다.) **개정안**이 **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**했다고 밝혔다.

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**3개 의원안**을 통합한 **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**으로,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**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**된다.

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첫째,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으로 **구성***된 **수·위탁분쟁조정협의회**(이하 '분쟁조정협의회')를 **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**하여 수·위탁기업 간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게 된다.

*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
분쟁조정협의회는 효율적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**조정부**를 둘 수 있고, **위원장 및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**하며, 위원의 **제척·기피·회피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**하였다.

분쟁조정 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, **조정절차의 효율성**, **조정결과에 대한 수용성** 등을 확보하여 법률에 근거해 새롭게 설치함으로써 낮은 조정 성립률 등 기존 분쟁조정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.

둘째, 분쟁조정 **신청 절차**를 **규정**하고, 분쟁조정 **신청**에 따른 **민사상 시효 중단의 효력**을 **부여**하였다.

셋째, 분쟁조정협의회에 '자료제출 요구권', '출석 요구권'을 **부여**하고,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**'조정서'**에는 **'민사상 집행력'**을 **부여**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통한 **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가능**하도록 하였다.

넷째, 법 위반기업이 위법행위에 따른 **수탁기업의 피해**를 **자료제출 요구**나 **조사 개시 이전**에 **자발적**으로 **구제**한 경우, **행정조치**(개선요구, 시정명령 등)**를 하지 않거나 벌점을 경감**할 수 있도록 하여 **자발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**를 지원한다.

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**수·위탁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**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**신속한 구제**가 이루어질 수 있는 **제도적 기반을 마련**하였으며,

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등 **피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**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.

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며,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법률로 성립하게 된다.

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"**납품대금 연동제**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**수·위탁기업 간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**할 수 있는 **기반**을 **마련**한 데에 의의가 있다"며,

"앞으로 수·위탁 분쟁조정 신청이 더욱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법률안 공포 이후 **하위법령 마련 등 차질없는 시행을 준비**하여 공정한 거래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고 덧붙였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